

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」 조문별 제·개정 이유서

1. 산업위기지역 적용 범위 등 (안 제3조의5, 제4조제3항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글로벌 공급과잉 등 구조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 기업의 사업재편 지원 강화를 위해 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」이 개정(2026. 4. 21. 법률 제21567호)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

나. 제·개정 내용

- 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적용 범위 등에 “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”을 추가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특별한 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산업위기지역 유형에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을 추가하여 사업재편 지원 대상을 확대

마.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

- 중복법안 없음

바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 없음

2. 사업재편 필요업종 선정을 위한 조사, 권고 등의 절차 구체화 (안 제8조 2, 제8조의3, 안 제8조의4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글로벌 공급과잉 등 구조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 기업의 사업재편 지원 강화를 위해 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」이 개정(2026. 4. 21. 법률 제21567호)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

나. 제·개정 내용

- 사업재편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한 심층조사의 대상을 명시
- 사업재편 필요업종 선정, 구조혁신방안 마련 시 전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치도록 하고, 관련 부처와 협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특별한 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행정절차 명확화, 구체화

마.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

- 중복법안 없음

바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 없음

3. 신용위험평가의 유예에 관한 특례 (안 제17조의2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사업재편 이행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」이 개정(2026. 4. 21. 법률 제21567호)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

나. 제·개정 내용

- 주채권은행이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에 대해 신용위험평가 유예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고,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기준을 명시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특별한 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의 신용위험평가 유예 관련 법적 안정성과 행정의 예측가능성 제고

마.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

- 중복법안 없음

바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 없음

4.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 특례 (안 제17조의4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중소기업의 사업재편계획 이행 시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이 승인 기업을 지원하는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기 위해 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」이 개정(2026. 4. 21. 법률 제21567호)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

나. 제·개정 내용

-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기 위한 요건을 명시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특별한 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 위험을 제거하여 상생형 사업재편 제도의 활성화를 기대

마.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

- 중복법안 없음

바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 없음

5. 설비 감축 기업 등에 대한 자금지원 근거 마련 (안 제18조, 안 제18조의2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글로벌 공급과잉 등 구조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 기업의 사업재편 지원 강화를 위해 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」이 개정(202

6. 4. 21. 법률 제21567호)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

나. 제·개정 내용

- 사업재편 승인기업이 설비 감축시에도 자금지원을 허용하고,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명시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특별한 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구조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 기업이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사업재편을 촉진하고 산업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함

마.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

- 중복법안 없음

바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 없음

6. 기타 위임사항 규정 (안 제8조의5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글로벌 공급과잉 등 구조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 기업의 사업재편 지원 강화를 위해 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」이 개정(2026. 4. 21. 법률 제21567호)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

나. 제·개정 내용

- 구조적 위기에 직면한 지역의 사업재편 지원 강화를 위해 지역별로도 사업재편지원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특별한 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지역의 핵심 기업에 대한 사업재편 지원 강화를 통해 산업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

마.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

- 중복법안 없음

바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 없음

7. 디지털 전환 유형의 범위 확대 (안 제3조의3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AI 등 산업기술 전환에 대응하고, 「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」 개정(2025. 12. 30. 법률 제21250호) 된 것을 반영해 디지털 전환 유형에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의 인공지능 관련 사항을 추가하여 지원 범위를 확대함

나. 제·개정 내용

- 디지털전환 유형에 인공지능 관련 사항 지원을 명확히 하여 기업의 디지털 전환 및 AI 대응에 대한 지원 근거 규정 마련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특별한 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기업의 디지털전환 활성화를 통해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

마.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

- 중복법안 없음

바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 없음